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우정사업본부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개정 검토 보고

1. 관련

- 가. 경영총괄담당관-414(‘17.9.25.,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)
나. 우체국관리과-559(‘17.10.26, 특례법시행령 개정 이유 제출)

2. 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개정 요청에 따른 조문별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- 가. (주요내용) 특례법상 우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의 선택기회 확대

○ 특례법시행령 개정(안)

현 행	개 정(안)
제21조의2(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)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 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<u>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.</u>	제21조의2(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) ④ ----- ----- ----- <u>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

- 나. (향후 일정) 과기부 개정안 송부(‘17.11월) → 입법예고(40일) → 법제처 심사(‘18.1월)
→ 차관회의·국무회의(‘18.2월) → 개정(‘18년 2월)

- 붙임 1.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검토 보고 1부
2.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 1부. 끝.

★ 주무관 박세호 행정사무관 황숙연 경영총괄담당관 박인환 경영기획실장 이병철

본부장 11/23 강성주

협조자

시행 경영총괄담당관-852 (2017.11.23.) 접수 ()

☎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/ <http://www.koreapost.go.kr>
전화 044-200-8122 /전송 044-200-8122 / parkseho1@koreapost.go.kr / 공개